

---

# 토지보상법 제35조 규정에서 “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

##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5조 규정에서 “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 2 회신

「토지보상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하며, 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3.14. 토지정책과-1219】